

별첨 1

디지털뉴딜 관련 직종

○ 디지털뉴딜 분야

1. D.N.A. 생태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② 1·2·3차 주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③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④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②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3. 비대면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②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③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4. SOC 디지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②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③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디지털 관련 업종인 기업

10. 정보통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1 출판업 10.2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0.3 방송업 10.4 우편 및 통신업 10.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6 정보서비스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1 연구개발업 13.2 전문 서비스업 13.3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3.4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디지털 핵심분야 관련 업종 기업

<p>헬스 케어</p>	<p>1. 디지털 치료제 2. 시 기반 실시간 질병진단 2.. 실시간 생체정보 측정·분석 3. 감염경로 예측·조기분석 4. RNA바이러스 대항 백신기술</p>	<p>교육</p>	<p>1. 실감형 교육을 위한 가상·혼합현실 기술 2.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기술 3. 온라인수업을 위한 대용량 통신 기술</p>
<p>교통</p>	<p>1. 감염의심자 이송용 자율주행차 2. 개인 맞춤형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3. 통합교통서비스(MaaS)</p>	<p>물류</p>	<p>1. ICT기반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 2. 배송용 자율주행로봇 3. 유통물류센터 스마트화 기술</p>
<p>제조</p>	<p>1. 디지털트윈 2.. 인간증강기술 3. 협동로봇기술 4. 스마트공장</p>	<p>환경</p>	<p>1.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용 로봇 2. 인수공통감염병 통합관리기술</p>
<p>문화</p>	<p>1. 실감 중계 서비스 2. 딥페이크 탐지기술 3. 드론 기반의 GIS 구축 및 3D영상화 기술</p>	<p>정보 보안</p>	<p>1. 화상회의 보안성 확보기술 2. 양자얽힘 기반의 화상보안통신 기술 3. 동형암호 이용 동선 추적 시스템</p>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유망기술 25선' 선정 발표(20.04.29) 참고

□ **중소기업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5.6.30, 2016.4.5, 2016.4.26, 2017.10.17, 2021.2.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6.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 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12.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6.4.26, 2021.4.20>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이종)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4.26, 2021.6.8>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2.12>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4.20>

[전문개정 2011.12.28]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제외)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별첨 3
지식서비스산업 업종표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10차)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4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66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61	병원
862	의원
869	기타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별첨 4
문화콘텐츠산업 업종표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10차)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91	공연 기획업

별첨 5**신·재생 에너지 산업 업종표**

○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업종도 해당

신재생 에너지	태양전지(3세대)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에너지
	지열발전
	해양에너지(태양열에너지,조력발전 포함)
	육상풍력발전
	태양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별첨 6

참여기업 제외대상

- (1)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해당기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2)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 상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참조)
- (4)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5)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 (6)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인위적 감원 :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번호 “23”①~⑥ 또는 “26”③)
- (7)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8) 노사분규 중인 기업 등 참여인력의 정상 근무가 어려운 기업
- (9)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10) 일자리 부정 채용 참여제한
- (10) 과거 인위적 감원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1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2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제한 해당자
*다만, 21년 기존유형과 22년 신규유형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 허용
- (1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기간이 연속 2년 초과한 사업장
- (13) 과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중 6개월 이내 참여청년의 중도포기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
- (14) 자본잠식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렵거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15) 기타 사업의 목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 단, 신청마감일 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은 신청 가능